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70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김재섭 · 엄태영 · 김용태
이헌승 · 한지아 · 김상훈
고동진 · 김기웅 · 김은혜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거래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기준과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

를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164조의4의 제목 중 “제출”을 “제출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거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7조제4호 중 “제164조의4제2항”을 “제164조의4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을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30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 제4호 중 “제164조의4제2항

의 개정규정, 제177조”를 “제177조”로 하며, 같은 부칙 제6조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2조 중 “2028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2호, 같은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부칙 제20조제2항 및 같은 부칙 제22조 중 “2027년 1월 1일”을 각각 “203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생 략)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u>2027년 1월 1일</u> 전 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은 <u>2026년 12월</u> <u>31일</u>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으로 한다.	⑤ ----- ----- <u>2030년 1월 1일</u> ----- ----- ----- <u>2029년 12월</u> <u>31일</u> ----- ----- -----.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u>2</u> <u>027년 1월 1일</u>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 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 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 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⑥ ----- ----- <u>2</u> <u>030년 1월 1일</u> ----- ----- ----- ----- ----- ----- -----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① (생략)

<신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

-----.

⑦ (현행과 같음)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및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거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

-----아니하거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

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 3. (생략) 4. <u>제164조의4제2항</u>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및 <u>제164조의4제1항</u>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생략) 4.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u>제164조의4제2항</u>의 개정규정, <u>제177조의 개정규정</u>: 2028년 1월 1일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64조의4제3항</u>----- -----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제164조의4의 개정규정</u>: 2030년 1월 1일 3. (현행과 같음) 4. ----- -----<u>제177조</u>----- -----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
--	---

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 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u>202</u> <u>7년 1월 1일</u>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 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u>20</u> <u>28년 1월 1일</u>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1. (생략)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 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 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	식에 관한 적용례) ----- ----- -----203 <u>0년 1월 1일</u> ----- -----.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에 관한 적용례) ----- ----- -----20 <u>30년 1월 1일</u> ----- ----- -----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 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u> <u>027년 1월 1일</u> 이후 가상자산 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 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 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u>2027</u> <u>년 1월 1일</u> 이후 발생하는 가 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 음) ② ----- -----<u>2</u> <u>030년 1월 1일</u>----- -----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 한 적용례) ----- ----- -----<u>2030</u> <u>년 1월 1일</u>----- -----.
--	--